

보험사기의 실태와 특성: 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 수 정[†] 김 윤 지 이 지 연 조 보 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 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범죄의 현행법상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떤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로 생계형, 조직형 보험범죄가 급증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며, 주로 가족을 피해 대상으로 하여 둘 이상의 공범이 사기를 공모하는 집단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험범죄를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가 있었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보험사기의 상위 범주인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편견과 용인적인 태도가 범죄의 만성화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을 찾아내 잠재적 위험군을 감별하여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국내 보험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을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의 총 3가지로 분류해 각 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성격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보험사기, 보험범죄, 연성사기, 경성사기, 화이트칼라범죄, 심리적변인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국내 보험업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하며 경제적 발전 및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안경옥, 2003).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 산업은 세계 6위에 이르렀다(탁희성, 2000). 그러나 IMF 이후 사회적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가 등장하였고, 점점 그 양상이 고도화 되며 지능화 되어 왔다(이규안, 2011).

국내 보험사기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80년대 보험 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비교적 최근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사기가 일어나고 있어 적발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안경옥, 2003). 보험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범죄 중 하나이다.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이 지급된 보험금의 약 1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Fraud)는 종종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아직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이 완전치 않고 비교적 경미하게 취급되거나 범죄로 여겨지지 않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실행의 결과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Smith, Button, Johnston, & Frimpong, 2010). 국내에서 진행된 보험사기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험범죄 유발요인으로 경제적 측면 혹은

사회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성만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보험범죄자만의 성격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지만, 최근에 들어 보험사기를 화이트 칼라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왔다(Smith et al., 2010). 이를 통해 외국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살인을 범하는 폭력 위험성을 수반한 레드칼라 범죄자(red-collar criminal)와 같이 구체적 유형이 제기될 정도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왔다(Perri, 2007; Brody, Melendy, & Perri, 2012). 이처럼 다소 경미한 보험사기에서부터 인명의 피해를 수반하는 보험범죄의 극단화 혹은 만성화 가능성 또한 화두가 되어온 바, 보험사기범들을 조사함에 있어 그들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성향들을 찾아 유형화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erri, 2011).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변인을 제시하고, 보다 적합한 심리적 특성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보험사기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소개한 후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사기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판례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보험사기범의 심리적 특징은 보험사기 및 사기,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했다.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Insurance Fraud)는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업무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기 행위로 정의된다(김상균, 2008).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험사기를 보험범죄(Insurance Crime)와 구분 짓기도 하는데, 통상 보험범죄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범죄의도를 가지고 본인 또는 제 3자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형법상 범법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조해균, 양혜승, 1992; 이병희, 2002; 한상철, 정병수, 2009). 실무적으로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의 궁극적 목적인 금전적 이익은 보험자의 보험금으로부터 편취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므로(탁희성, 2000), 본 논문에서도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보아 번갈아 사용하고자 한다.

보험사기의 하위유형: 연성사기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는 크게 연성사기(Soft Fraud)와 경성사기(Hard Fraud)로 나뉜다(탁희성, 2000). 이 중 연성사기는 보험에 일단 가입하여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이후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김현수, 2005; 배철호, 양경규, 2005). 연성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는 병력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사고 후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

이 있다(김현수, 2005).

연성사기의 특징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이석호, 2007). 조해균과 양왕승(2001)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험사기는 발각될 가능성이 적고 그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본인이 지급해 온 보험금을 환불 받는 식의 보상심리로써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다(조해균, 양왕승, 2001).

보험사기 하위유형: 경성사기

다음으로,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의 범죄와 결합된 보험범죄의 한 형태로서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하여 생명보험금 및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기를 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고 범법행위라는 결과를 동반하는 보험범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을 전제하고 중대 범죄 행위와 결합된 형태의 경성사기는 보험범죄로 지칭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해균, 1990; 박영수, 2014).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연성사기와는 달리, 경성사기는 살인, 방화 등의 행위의 결과가 명백히 형법적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성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는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연고가 없는 노숙인을 죽이고 허위 사망 신고를 하는 사건 등이다(김현수, 2005). 경성사기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높고, 애초부터 범행 계획이 상당히 치밀하며,

강력한 범죄행위가 수반된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및 수사기관의 주요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이석호, 2007).

전체 보험사기의 실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국내 보험사기는 IMF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탁희성, 2000; 이병희, 2002; 박영수, 2013).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1년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749건이었으나 이후 2002년에는 5,757건, 2003년에는 9,415건, 2004년에는 16,513건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4년 한 해만도 84,385건에 이르렀다(금융감독원, 2014).

이처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험범죄라는 분류로 공식적인 통계치마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탁희성, 2000; 김상균, 2008; 이규안, 2011),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보험사의 독특한 경영방식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지나치게 허용적인 데에 있다. 가령,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든 쉽게 보험 상품들의 홍보 문구를 찾아볼 수 있어 접근이 쉬우며, 신규계약 실적이 승진과 직결되는 보험회사의 경영 철학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당시 성실성 여부나 적합성 심사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탁희성, 2000). 둘째, 우리나라 법률조항에는 보험범죄에 대한 직접적 정의가 없고, 형법 제 347조의 사기 규정에 의거, 보험을 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는 데에 있다(이규안, 2011). 더욱이, 보험범죄수사

에 있어 수사기관의 경우 보험범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때 손해보험협회나 몇몇 대형 보험회사 내 보험범죄 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on Unit)에서 자체조사를 하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의 공유가 부재한 채 범죄조사 형식이 이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한상철, 정병수, 2009). 즉, 보험관련 기관간 원활하지 않은 정보공유 탓에 정확한 보험범죄의 실태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보험사기의 특성상 발각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김상균(2008)에 의하면, 일반범죄와 달리 보험범죄는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며, 발각의 위험까지 대비하는 은밀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의심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2인 이상의 공범을 끌어들여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등 조직성을 띠고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김상균, 2008). 따라서, 이러한 국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현행법상의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사기의 정확한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집계된 보험사기 실태조사 자료를 해석할 시에는 과소 추정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기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 제시된 금융감독원(2015)에서 추정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따르면, 2006년 당시 1,781억 원이었던 금액이 2014년에 와서 약 3배에 이르는 등 5,997억 원이 보험사기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보도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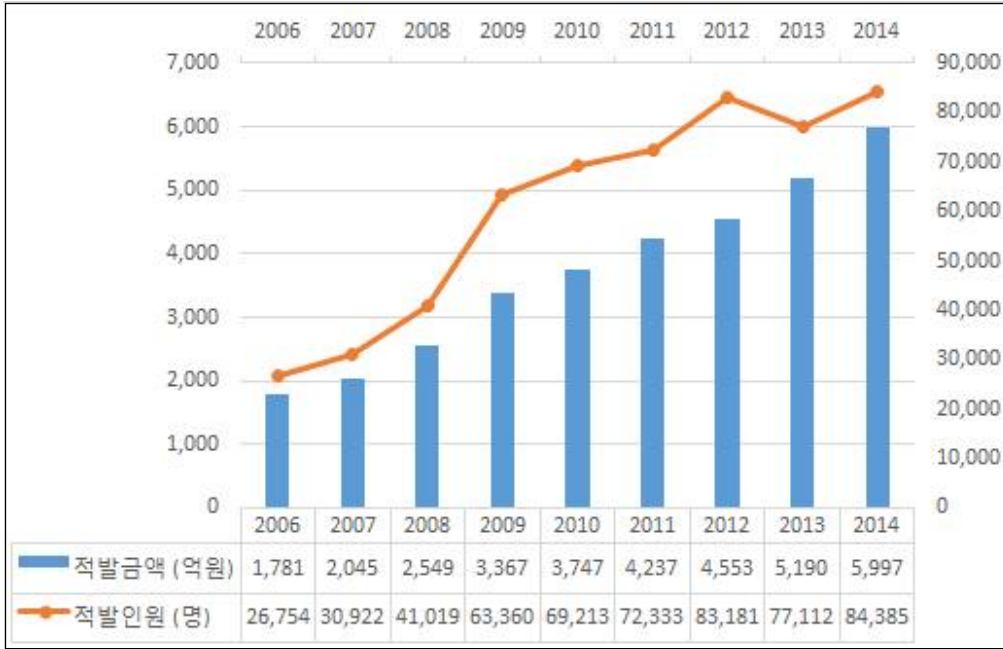


그림 1. 보험사기 적발 실적

※ 출처: 금융감독원(2006-2014).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재구성.

상반기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 원에 육박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보험사기의 추세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자료는 없는 관계로 전반적인 해석만 가능하다(금융감독원, 2015).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에서 50대이고, 이들은 40, 30,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장년층 비율의 감소와 중, 노년층 비율의 증가인데, 2006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2014년에 이르러서는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사기의 하위유형별 실태

앞서 제시한 전체 보험사기의 현황과 더불어 보험사기의 하위유형별 실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12월에 보도된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는 연성사기를 고의사고, 허위 및 과다사고, 피해과장,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구성비에 따르면, 고의사고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허위 및 과다 사고의 범주는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타 유형에 비해 허위 및 과다사고에서 적발금액 대비 인원 비율이 평균 약 72.2%로 고의사고 평균 약 14.8%, 피해과장 평균 약 7.6% 등

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 유형의 범죄에 가장 다수가 개입되고 가장 높은 손실을 야기하지만 개인당 적발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성사기의 측면에서 볼 때,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건수 중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49.7%)이 자동차보험(47.2%)보다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2014년(44.5%)에 비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활성화 및 집중 단속으로 인해 2014년(50.2%)부터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보험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혐의 건을 분석한 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원인은 살인고사 등 살인이 26.6%로 가장 많았다. 보험계약 특성으로는 전체 피보험자의 76.6%가 사고발생 전 1년 이내에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망보험금 총액은 인당 평균 14.0억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탁희성(2000)이 주장했던 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총액을 높이려는 국내 보험사기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보험사기의 사례

이 장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보고서인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를 참고하여 판례분석 결과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판례분석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보험범죄관련판례 1,017개를 분석한 결과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면 성별에서는 보험범죄자 중 남성의 비율이(78.7%) 여성의 비율과(21.3)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1.5%)와 60대 이상(4.5)을 제외한 20대(23.9%), 30대(26.7%), 40대(25.4%), 50대(18%)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특별히 2002년, 2007년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0대와 20대의 비율의 뚜렷한 감소와 30대의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 40,50,60대 비율의 확연한 증가 추세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30-5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으며 청, 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별 범죄율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보험범죄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별로는 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타직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44.6%) 다음으로 많은 직업군은 무직이었다. 무직군의 상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적발통계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연별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1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유형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범죄 유형별 사건 빈도가 제시되어있다. 사고 유발형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허위신고, 피해 과장형이 각각 약 24%, 22%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보험사기의 하위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사고유발만이 경성사기에 포함되며 나머지 유형은 모두 연성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표 1. 보험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신고종류(%)

유형	빈도 (비율)	범죄건수 (평균)	위반건수 (평균)	편취금액 (1인당 평균)	집행유예	징역	벌금
사고유발	694(40.4)	14.49	7.43	48,949,036	24.4	29.7	45.9
피해과장	384(22.3)	53.42	23.91	69,095,830	28.4	19.8	51.8
허위신고	422(24.5)	267.99	261.13	281,537,327	26.8	17.4	55.8
의료비 과다청구	73(4.2)	332.60	1,066.88	143,124,276	22.6	8.1	69.4
사후보험	27(1.6)	24.48	3.19	181,844,726	40.9	22.7	36.4
바꿔치기	44(2.6)	1.34	1.05	16,097,254	31.0	9.5	59.5
수리비 과다청구	26(1.5)	222.92	218.58	28,006,699	37.5	0	62.5
기타	49(2.9)	11.45	9.06	96,547,206	27.3	18.2	54.5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을 재구성.

서 판례상에서의 연성 사기와 경성사기의 비율은 약 60대 40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 보험범죄 중 연성사기 형태의 범죄가 비교적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범죄건수는 보험금 청구횟수를 보험사기 착수로 보아 그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위반건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살인, 방화, 교통사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횟수를 기록한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2). 두 범주의 구체적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비 과다청구, 허위신고, 수리비 과다청구형의 순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 과다 청구형과 수리비 과다 청구형 모두 범죄 빈도수는 높지 않은데 비해 상당히 높은 범죄 및 위반 횟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허위신고를 제외한 의료비 과다청구, 수리비 과다청구 유형의 피고인의 상당수가 유형 특성과 밀접한 병원 관련 직업, 자동차 관련 직업 종사자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높은 범죄, 위반횟수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편취금액은 허위 신고형이 약 2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냈으며 의료비 과다청구, 사후 보험형이 그 뒤를 이었다.

재판에서 범죄유형별 신고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사후보험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고되었으며 이후 구체적 신고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집행유예, 징역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단 사후보험형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받았으며 벌금, 징역형이 그 뒤를 이었고 사고유발형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벌금형의 비율이 낮고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고유발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인명피해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범죄 유형은 허위신고형이다. ‘허위신고’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편취하는 유형으로 사고유발형처럼 중대한 범죄행

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위반횟수에 있어서도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1인당 편취금액과 높은 범죄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보험범죄의 주요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의 비율이 높으며 벌금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보험사기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 보험사기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Smith et al., 2010). Duffield와 Grabosky (2001)에 의하면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유형화 작업이 사기와 화이트칼라 범죄 모두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몇몇 공통분모를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범죄학 관련 학자들은 통상 사기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고 간주한다(Smith et al., 2010). 이처럼 사기의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아 타 범죄와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자체 혹은 범죄자의 특성을 가지고 보험범죄자의 원인 및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Weisburd, Wheeler, Waring, & Bode, 1991; Ganon & Donegan, 2006; Brody et al., 2012).

이처럼 보험범죄가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로 분류되는 만큼,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사법통계국(The Federal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란 개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비폭력적 범죄로 정의된다(미국연방사법통계국, 2011; Perri & Lichtenwald, 2007). 화이트칼라 범죄는 분명한 사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고, 대인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등 장기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관점이다(Perri, 2011).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수사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가령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우연적인 실수로 범행을 한번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out of character offences)’ 정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Dorminey, Fleming, Kranaacher, & Riley, 2010; Perri, 2011). 이에 맞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범죄 행위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심리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성격들을 토대로 범죄자 유형을 분류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사전에 보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Brody et al., 2012). 특히 사기 범죄자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Hare, 1993; Boddy, 2006; Ray, 2007). 선행 연구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관계에 있어 항상 우위에 있고, 자기도취적이며, 무자비한 점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Hare, 1993; Steinberger, 2004). 또한, 공

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면모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범죄 기록은 없더라도 자라오면서 반사회적인 사고나 행동을 자주 해 온 경향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Herve & Yuille, 2007).

기회주의적 사고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 중 다수는 마키아벨리즘적 자기본위 특성(Machiavellian Egocentricity)을 지니고 있어 권모술수에 능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등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다(Brody et al., 2012). 또한 그들은 인간 자체를 혐오하며,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Perri, 2011). 때문에 사회적 지위 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심하게는 인간의 도의, 선의로 인한 배려와 선행을 약점으로 보고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후 범죄가 발각되면 변명거리로 악용하기도 한다(Perri, 2011; Antar, 2009). 보험사기의 특성상 정보 불균형이 불가피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자연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보험범죄자들의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범죄적 특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Felson & Clarke, 1998; Viaene & Dedene, 2004).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또 다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비슷한 수준과 빈도로 일탈적인 범죄를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Walters & Geyer,

200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범법 행위가 만성화된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청소년기에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나 체포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범죄적인 생활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Walters & Geyer, 2004; Ragatz, Fremouw, & Baker, 2012), 이를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환경, 높은 교육적 수준, 기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impson & Piquero, 2002).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 보험범죄자들은 타 유형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성은 높지만, 범죄 행위를 계획할 때에는 더욱 치밀하다(Ray, 2007). 더불어, 불안과 걱정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들이 범죄 행위를 추구할 때에도 적절한 대상과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회주의적인 특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Collins & Schmidt, 1993). 또한 적발에 대비하는 이러한 습성은 환경적 영향과 함께 반사회적인 성향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범죄 전력이 드문 것 또한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Perri, 2011; Burkely, 2010).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한 우연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Perri, 2011). 이는 그들이 체포되는 일이 드물거나(Freiberg, 2000),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 비교적 덜 가시화되었기 때문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재범을 할 확률이 결코 낮지 않으며(Weisburd, Chayet, & Waring, 1990), 재범률에 있어서 타 유형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만성화된 범죄자로 분류함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Walters et al., 2004; Perri, 2011).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

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있어 보험사기는 저위험, 고보상(low-risk, high-reward)을 보장하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주로 성실성이 부족하고, 자극을 추구하고,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아 기생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는 등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Hare, 1993; Herve et al., 2007; Perri, 2011), 보험범죄자들 역시 금전적 이득을 쉽게 얻어 단기간에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선택하고, 범죄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합한 대상을 찾아내어 접근하는 포식자적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Dorminey et al., 2010).

보험사기는 동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Viaene et al., 2004). 특히 보험사기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여 개인의 노력과 존엄을 짓밟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성이 더욱 부각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며 일상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데, 그들에게 범죄란 단순히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에 불과하다(Alalchto, 2003).

종합해보면, 범죄 행위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과 더불어 노동과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삶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 범행의 동기를 만들고, 정보의 불균형이 명백한 보험사기를 범행 도구로 선택하여 미약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 포식자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온 특징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이다(탁희성, 2000; Duffield & Grabosky, 2001; 송윤아, 2010). 보험범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보험범죄 및 보험회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비윤리적 합리화 메커니즘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높은 관용수준을 갖고 있었다(탁희성, 2000; 이석호, 2007; Fisher, 2015).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영국 보험인 협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0%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26%가 보험금 허위 청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했다(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2003). 동일한 조사에서 55%가 상점에서 잔돈을 더 받는 행위, 36%가 장물죄, 20%가 음주 운전을 관용할 수 있다고 여긴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 대중들이 보험사기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연성 및 경성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30%정도가 이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성사기의 수용도가 경성사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송윤아, 2010). 이는 연성범죄의 경우 고의성 혹은 계획성이 존재하기 보다는 우연적인 기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실시된 생명보험성향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19%정도가 보험사기를 경미한 범죄 혹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

다(생명보험협회, 2015).

Cummins와 Tennyson(1966)은 보험범죄에 대한 관용도가 도덕적 위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끼워 넣기, 과다 보험금 청구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사기행위를 수용하고 지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손해보상(bodily injury liability)을 청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개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는 실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기행위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며(Cummins & Tennyson, 1966), 보험사기에 대한 경미한 도덕적 인식은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관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Insurance research council, 1991; Cummins, Tennyson, 1996). 국내 연구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가 보험사기의 행위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험사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행위 의사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김현수, 2005).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 역시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 역시 보험범죄가 가지는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라고스주(Lagos)에서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조사의 결과 보험가입자의 60% 정도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Ojikutu, Yusuf, & Obalola, 2011). 이러한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원인은 보험회사에 갖고 있는 이미지, 본인 혹은 지인의 보험관련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 연구의 경우 피검자의 절반정도(43%)만 보험

에 가입하였으며,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다른 문화적 혹은 상황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이 연구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Niemi(1995)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 범죄학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를 이질적인, 개인과 관계없는 거대한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불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보험범죄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험범죄 및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론 중 하나는 Fraud Triangle이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Cressey(1953)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회, 동기 그리고 합리화의 과정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사기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Cressey, 1953; Ramamoorti, 2008; Murphy & Dacin, 2011).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인지된 동기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도덕적 직관을 통해 행위에 대한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된다. 만일 이 단계에서 직관이 행위에 반하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화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Sykes와 Matza(1957)는 합리화 전략의 중심 개념인 중화이론(neutralization)을 제시했는데, 책임 부정, 피해 및 피해자 부정, 검사 및 판사와 같이 죄를 선고한 자를 비난하는 과정 등이 이에 속했다(Sykes & Matza, 1957; Matza, 1964). 따라서 보험사기범들은 위와 같은 합리화의 과정을 통

해 비도덕적 행위에서 오는 수치심 및 죄책감의 감정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집단주의

국내 보험범죄는 공범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집단성은 '집단화', '조직화'라는 명칭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험범죄의 유형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신의기, 2007; 김상균, 2008; 정웅, 2009; 이승준, 2012). 집단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보험범죄의 특성이나 심리적 경로를 설명할 때 등장하지 않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범죄자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보험범죄의 집단성은 국외의 보험범죄뿐 아니라 타 범죄의 공범 집단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는 공범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보험범죄 1건 당 피의자 수를 보면 단독범 48.2%, 2인이상이 51.8%로 과반수이상의 범죄가 공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6명 이상인 사건 또한 19.7%로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는 강, 절도 공범의 92.5%가 4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인 것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강지현, 2014), 범죄의 공범 집단은 주로 2-4명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선행 연구들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Reiss, 1986; Reiss & Farrington, 1991; McGlorin, Sullivan, Piquero, & Bacon, 2008). 국내의 보험범죄는 단독범, 5인 이하 공범, 6인 이상의 공범의 비율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범 집단 내 동질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들 중 보험범죄의 공범 집단 동질성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보험범죄의 동향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보험의 계약 내용, 약관의 복잡성과 같은 보험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실행을 위한 보험설계사나 관련자의 공범의 많으며, 최근에는 폭력 조직, 병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 통계와 사건 개요를 통해 이질성을 추정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범죄 판례를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직업, 병원 관련 직업,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관련 전문직업인의 범죄가 전체 범죄자의 약 23%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의 주요 범죄 유형은 수리비 과다청구, 바뀐치기, 의료비 과다청구, 사후보험 등 대부분 연성사기에 해당하며, 공범이 필요한 범죄유형으로 단독범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의료비 과다청구의 경우에는 병원 관련 직업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77.8%), 수리비 과다청구(42.3%)나 피해과장(20.9%)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직업군이, 사후보험(18.5%)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으로 높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 지식을 이용하고 범죄의 필요성을 느끼는 타인과 결탁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시 범죄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 등 일반적인 전통 범죄와 다른 특징들을 보이므로 보험범죄 파악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Clinard & Quinney, 1973; Croall, 1992; 이윤호, 2011). 실제로 2011년 태백에서 일어난 집단 보험사기의 경우도 병원 관계자, 보험 관계자, 주민이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해 결탁한 사건으로 이러한 이질적인 집단의 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범죄의 이질적인 공범 집단 특성은 연령, 성별, 범죄경험 등에서 자신과 유사한 공범과 교제하는 범죄자들의 경향으로 공범 집단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Warr, 1996; Weerman, 2003)과는 상이하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기 보단 이익관계와 기회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보편화’ 경향의 위험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서의 집단성이란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 이익, 집단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집단주의와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 집단을 형성하며 위법에 대한 책임의 분산, 전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범 집단의 실제적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심

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범죄자에 게 적용될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에서 보험사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반면 (Walters & Geyer, 2005; Brody et al., 2012), 우리나라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연성사기로, 살인이나 방화처럼 인명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를 경성사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 보험사기의 실태와 사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성사기가 경성사기보다 약 5배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석호, 2007), 연성사기의 경우에는 손해범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가 경성사기, 그 중에서도 피해금액이 높은 보험 살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이 지적되어 왔다(김현수, 2005; 송윤아, 2010).

한편, Perri(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을 띠면서 인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을 레드칼라 범죄로 따로 구분하거나 그 중에서도 공범을 살해하는 사례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드는 등 다양한 보험범죄 사례를 특정 범죄 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뉴얼 재구성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만성화되거나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레드칼라 범죄로 진화하는 등의 현상을 대비하고자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그 중에서도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Brody et al.,

2012), 이는 타 유형의 범죄보다 유연하고, 특히 가해자의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성향을 갖지 않고 있을 것이라 믿는 태도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범죄를 오히려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Dorminey et al., 2010; Perri, 2011).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자기도취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등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데(Hare, 1993; Bobby, 2006; Ray, 2007),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향후 재범을 할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eisburd et al., 2001). 신정훈(2006)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례를 들어 경미한 수준의 보험사기가 반복되어 추후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연성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적 정의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보았을 때 화이트칼라 범죄는 연성사기에, 레드칼라 범죄는 경성사기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범죄자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회주의적 사고, 도덕적 해이, 집단주의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여파, 그리고 대상의 가치를 무시하여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Viaene과 Dedene(2004)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보험사기는 동기와 기회가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한탕주

의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와 적합한 환경을 기다리는 포식자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도와 경미한 처벌이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저위험, 고보상'이라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부합하는 개념이다. 즉,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누적되고, 암수 범죄들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많아 결국 범죄 행동을 학습해 쉽게 재범을 저지르게 되며, 이는 범죄 만성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 특성으로는 집단주의를 제시하였다. 국내 보험사기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집단화, 공범의 존재이다(탁희성, 2000; 김상균, 2008; 이승준, 2010). 이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발각되었을 때 혐의로부터 벗어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공모할 때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전적 이해관계인들과의 조직적 범죄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던 2011년 '태백 집단 보험사기'처럼 애초 연성사기의 형태부터 시작하는 의료보험 관련 사기에 비해 경성사기는 강호순 사례처럼 주로 반사회적인 범죄적 사고를 지닌 전문범죄자들의 가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국내 보험범죄자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고 향후 공범 집단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애초 연성사기에서 경성사기로 진화하는 범죄의 속성 중 범죄자의 심리적 변인을 밝혀내고자 했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없이 주로 외국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성화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성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잡아 국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들을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와 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 판례집을 통해 실태와 사건 개요 등을 피상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험범죄자, 특히 동종 범죄를 재범한 이들의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 외국의 자료를 명확히 대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것이 가장 큰 제한점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화이트칼라의 하위 범주에 사기가 있다는 학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 사기 범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범의 심리학적 특성을 논하고 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성 그 중에서도 앞서 제시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진화된 보험사기범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경성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심리특성에 대한 분석과 보다 진화된 형태의 연성사기를 범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특성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지현 (2014). 강, 절도의 공범집단: 공범집단의 동질성과 범행지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3, 1-24
 금융감독원 (2013). 보도 자료(2013년 1월 25일).
 금융감독원 (2014). 보험사기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2015). 보도 자료(2015년 9월 17일).

금융감독원 (2015). 보도 자료(2015년 12월 17일).
 김상균 (2008).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4(2), 25-53.
 김현수 (2005).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보험금융연구, 45, 77-117.
 대한손해보험협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I.
 대한손해보험협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II.
 미국연방사법통계국. (2011). the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Data Terminology.
 박영수 (2014). 보험범죄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4(2), 156-187.
 배철효, 양영규 (2005). 보험사기에 관한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4(2), 156-187.
 생명보험협회 (2015). 생명보험성향조사서.
 송윤아 (2010).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보험연구원.
 신의기(2007).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9, 1361-1396.
 신정훈 (2006).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3), 115-150
 안경옥 (2003).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59-104.
 이규안 (2011). 보험범죄의 현황과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수사 활용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5(2), 294-297.
 이병희 (2002).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석호. (2007). 금주의 논단: 보험사의 공익성과 보험취약계층.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

- 브리프, 16(9), 3-7.
- 이승준 (2012). 보험범죄의 경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통향*, 34, 199-234.
- 이운호 (2011).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정웅 (2009).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실태와 제도적 대응방향. *사회과학연구* 15(2), 275-305.
- 조해균 (1990).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35, 75-102.
- 조해균, 양왕승 (2001).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2(2), 33-56.
- 탁희성 (2000).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11-16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
- 한상철, 정병수 (2009). 보험범죄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와 수사기관의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97-321.
- Alalehto, T. (2003). Economic crime: Does personalit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3), 335-355.
- Antar, S. (2009). *Advice from a fraudster, white-collar crime and criminals*.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ABI. (2003). *News Release*.
- Boddy, C. R. (2006) The dark side of management decisions: Organizational psychopaths. *Management Decisions*, 44(10), 1461-1475.
- Brody, R. G., Melendy, S. R., & Perri, F. S. (2012). Commentary from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s 2011 Annual Meeting Panel on Emerging Issues in Fraud Research. *Accounting Horizons*, 26(3), 513-531.
- Burkely, M. (2010). *Is Dexter a successful psychopath?* *Psychology Today*.
- Clinard, M. B., & Quinney, R. (1973). *Criminal Behavior System: A typolog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ollins, J. M., & Schmidt, F. L. (1993). Personality, integrity, and white-collar crime: A construct validity study. *Personnel Psychology*, 46(2), 95-311.
- Cressey, D. R. (1953). *Other people's money; a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y of embezzlement*. New York, NY: Free Press.
- Croall, H. (1992). *White Collar Crime: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ummins, J. D., & Tennyson, S. (1996). Moral hazard in insurance claiming: evidence from automobil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2(1), 29-50.
- Dorminey, J. W., Fleming, A. S., Kranacher, M., & Riley, R. A. (2010). Beyond the fraud triangle: Enhancing deterrence of economic crimes. *The CPA Journal*, 17-23.
- Duffield, G. M., & Grabosky, P. N. (2001). *The psychology of fraud* (Vol. 199).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Felson, M., & Clarke, R. V. (1998). *Opportunity Makes the Thief: Practical Theory for Crime Prevention*. Police Research Series, 98, London: Home Office.
- Fisher, K. (2015). The psychology of fraud: what motivates fraudsters to commit crime?

- Freiberg, A. (1992). Sentencing white-collar criminals. *Australian Institute of Judicial Administration*, Sentencing of Federal Offenders, 1-19.
- Ganon, M. W., & Donegan, J. J. (2006). Self-control and insurance fraud. *Journal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4(1), 1-24.
- Hare, R. (1993). *Without consc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ve, H. & Yuille, J. C. (2007). *The Psychopath: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Insurance Research Council. (1991). *Public Attitude Monitor*.
- Niemi, H. (1995). Insurance fraud.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3(1), 48-71.
- Matza, D. (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Mcglorin, J. M., Sullivan, C. J., Piquero, A. R. & Bacon, S. (2008). Investigation the stability of co-offending and co-offenders among a sample of youthful offenders. *Criminology*, 46, 155-188
- Murphy, P. R., & Dacin, M. T. (2011). Psychological pathways to fraud: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fraud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 601-618.
- Ojikutu, R. K., Yusuf, T. O., & Obalola, M. A. (2011). Attitude and perception about insurance fraud in Lagos State, Nigeria. *European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57(4), 615-625.
- Perri, F. S. (2011). White-Collar Criminals: The 'Kinder, Gentler' Offender?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8(3), 217-241.
- Perri, F. S., & Lichtenwald, T. G., (2007). A proposed addition to the FBI criminal classification manual: Fraud detection homicide. *The Journal of Financial Crime*, 18(1), 41-57.
- Ragatz, L. L., Fremouw, W., & Baker, E. (2012). The Psychological profile of white-collar offenders: Demographics, Criminal Thinking, Psychopathic Trait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Justice and behavior*, 39(7), 978-997.
- Ramamoorti, S. (2008). The psychology and sociology of fraud: Integrating the behavioral sciences component into fraud and forensic accounting curricula.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23(4), 521-533.
- Ray, J. V. (2007). *Psychopathy, attitudinal beliefs, and white collar crim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Reiss, A. J. (1986). *Co-Offending and criminal careers*. In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vol. 2. eds. Alfred Blumstein. Jaqueline Cohen. Jeffert A. Roth. and Christy A. Visser. Washing DC: National Academy Press
- Reiss, A. & Farrington. D. P. (1991). 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Results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urvey of London mal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360-395
- Simpson, S. S., & Piquero, N. L. (2002). Low self-control, organizational theory, and corporate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6(3), 509-547.
- Smith, G., Button, M., Johnston, L., & Frimpong, K., (2010). *Studying fraud as white collar crime*.

- Palgrave Macmillan.
- Steinberger, M. (2004). *Psychopathic CEO's*, The New York Times.
- Sykes, G., & Matza, D.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6).
- Viaene, S., & Dedene, G. (2004). Insurance Fraud: Issues and Challeng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9(2), 313-333.
- Walters, G. D., & Geyer, M. D. (2004). Criminal thinking and identity in male-white collar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3), 263-281.
- Warr, M. (1996). Organization and instigation in delinquent group. *Criminology*, 34, 11-37.
- Weerman, F. M. (2003). Co-offending as social exchange: Explaining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2), 398-416.
- Weisburd, D., Chayet, E. F., & Waring, E. J. (1990). White-collar crime and criminal careers: Some preliminary findings. *Crime & Delinquency*, 36(3), 342-355.
- Weisburd, D., Wheeler, S., Waring, E., & Bode, Nancy. (1991). *Crimes of the Middle Class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6. 02. 20.
심사통과접수 : 2016. 03. 05.
최종원고접수 : 2016. 03. 20.

Understanding Insurance Fraud: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Features

Sue Jung Lee Yoon Ji Kim Ji Yeon Lee Boa Cho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features that may encourage insurance fraud. To do this, concept and prevalence of domestic insurance fraud were evalua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ent trends of insurance crime in Korea, three psychological features - opportunistic, moral hazard and organizational - were suggested. Most insurance frauds have become an organized crime which is schemed by more than two accomplices with the family typically as the victim. In addition, individuals tended to tolerate insurance fraud as acceptable and als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insurance companies. Prejudice and tolerance towards white collar criminals, which is the highest category of insurance fraud, had pointed out as a maintenance factor of chronic criminal patterns.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further discussed and a future study with insurance fraudsters was also suggested.

Key words :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soft crime, hard crime, white-collar crime, psychological factors